#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진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60

발의연월일: 2021. 1. 5.

발 의 자:배진교・민형배・허종식

강은미 • 김홍걸 • 이규민

심상정 • 유의동 • 이은주

류호정・양정숙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

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,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,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연합회·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학교)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, 국유재산·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나.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(안 제9조제5항 신설).
- 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27조의 2 및 제27조의3 신설).
- 라. 조합등의 사업을 집행·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 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1조).
- 마.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일정 부분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63조).
- 바. 사업영역과 사업방식 등 성격을 달리하는 보건·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

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인가된 보건·의료조합 또는 보건·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 조합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함(안 제72조).

법률 제 호

##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"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"을 "(국가등의 협력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국가 및 공공단체는"을 "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및 공공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국가등이라 한다)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시설 이용을"을 "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가 및 공공단체는"을 "국가등은"으로, "국유재산을"을 "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 물품을"로, "국유재산의 사용료를"을 "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국가 및 공공단체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매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3년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하되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 제목 "(총회의 의사)"를 "(총회의 의사정족수·의결정족수 및

의결권의 행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총회의 의사는"을 "총회는"으로 한다.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①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(이하 "재난 또는 감염병"이라 한다)으로 인해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  - ②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27조의3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①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로 재난 또는 감염병으로 인해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  - ②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③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

선택하여야 한다.

- ④ 조합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58조제1항 중 "60일 전에 예고하고"를 "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"로 한다.

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3조(임원)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.
  -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- 1. 회원에 속한 조합원
  - 2.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에 속한 조합

원이 아닌 자.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,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③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4조 전단 중 "제30조제3항·제4항 및 제31조부터"를 "제30조제3항·제4항, 제31조제3항·제4항, 제32조부터"로 한다.

제72조제2항 전단 중 "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"를 "인가된 보건·의료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보건·의료조합 이외의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"로 한다.

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.
-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1.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
- 2.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
- 3.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속한 조합원이 아닌 자.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,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

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) 제2 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가 결의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제9조(국가등의 협력 등) ① 국 등)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 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 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(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 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그 사업 육법 |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및 공공단체(이하 이 조에서 있다. "국가등이라 한다)는-----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 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----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 ③ 국가등은----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 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----국유재산,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-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 ④ 국가등은----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 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7조(총회의 의사) ① 총회의 제27조(총회의 의사정족수·의결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 회는-----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 활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과 협 력하여 매년 소비자생활협동조 합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야 하며 3년마다 소비자생활협 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매 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, 시 행하여야 한다.

의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) ① 총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① 조합은 이사회의 결 의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감염 병(이하 "재난 또는 감염병"이 라 한다)으로 인해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 <신 설>

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3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① 조합은 이 사회의 결의로 재난 또는 감염 병으로 인해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을 정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③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제1

 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

제41조(이사회) ① ~ ⑤ (생 략)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58조(탈퇴) ① 회원은 60일 전 제58조(탈퇴) ① -----정관으

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 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 다.

④ 조합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 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 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 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 제41조(이사회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② (생략)

제63조(임원) 임원은 정관으로 정 제63조(임원) ① 연합회에 임원으 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 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다.

제64조(준용 규정) 연합회의 기관 제64조(준용 규정) ------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26조부터 제29조

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.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 사를 둔다.

-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한다.
- 1. 회원에 속한 조합원
- 2.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에 속 한 조합원이 아닌 자. 이 경 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 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, 조 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다.
- ③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.

까지, 제30조제3항·제4항 및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합"은 "연합회"로, "조합원"은 "회원"으로 보고,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"5분의 1"은 "3분의 1"로 보며,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"조합원"은 "대의원"으로 보고, 제33조 중 "조합원"은 "대의원"이로 보고, 제33조 중 "조합원"은 "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"으로, "가입신청을 한 자"는 "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"으로 본다.

제72조(설립인가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발 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 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 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설립동의 조합의 총수는 전체 인가된 조 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 야 한다. 이 경우 연합회가 설

<u>제30소제3항·</u>
제4항, 제31조제3항·제4항, 제3
2조부터
제72조(설립인가 등) ① (현행과
같음)
2
인가된 보건·의료조
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거나
보건·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

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----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75조(임원)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제75조(임원) ① 연합회에 이사장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 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다.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1명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.

-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한다.
- 1.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
- 2.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 원
- 3.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속 한 조합원이 아닌 자. 이 경 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 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, 조 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.

<u>②</u> (생 략)

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